

제3자 신형 권리침해정보 심의 반대

인터넷 내용심의는

형사법적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객관적, 명확한 불법·유해정보에 대하여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

주관적, 불명확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정보에 대해
제3자에 의한 심의신청을 허용하고,
위원회가 이를 규율하겠다는 것은
법에서 정한 위원회 임무의 한계를 일탈하고,
심의의 기본원칙과 질서를 혼드는 것이다.

명예훼손 당사자 본인의 의사가 무시된 사안의 공론화,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비판적 여론형성 위축을 우려하는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통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은
제3기 위원회가 지켜온 합의제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적 여론을 직시하여, 심의규정 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5. 8. 12.

대통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